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8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강승규·강대식·권성동

박대출 • 정희용 • 인요한

김미애 · 임종득 · 김대식

김장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개발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낙후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정부는 보조금 중심의 예산 지원을 펼치 고 있음.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낙후된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중앙 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별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설치하고 민감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상생협약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도입하여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 분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4항, 제27조의3 및 제5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의 체결을 권 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의3(상생협력상가의 조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은 임차인이 장기간에 걸쳐 저렴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 하는 임대차기간과 차임 및 보증금의 범위에서 임대차계약이 가능 한 상가건물(이하 "상생협력상가"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상가의 조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상가의 조성 방법, 조성 절차 및 비용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도시재생 지역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 ② 도시재생 지역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도시재생 지역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2(상생협약) ① ~ ③	제27조의2(상생협약)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의 체결
	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u>다.</u>
<u> <신 설></u>	제27조의3(상생협력상가의 조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
	장등은 임차인이 장기간에 걸
	쳐 저렴하게 영업을 할 수 있
	도록 조례로 정하는 임대차기
	간과 차임 및 보증금의 범위에
	서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상가
	건물(이하 "상생협력상가"라 한
	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상가의
	조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
	생협력상가의 조성 방법, 조성
	절차 및 비용의 지원 등에 필

<신 설>

<u>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u>한다.

제57조의2(도시재생 지역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재생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지 역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도시재생 지역기금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 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 재생 지역기금을 조성하기 위 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 ⑤ 도시재생 지역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